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D-60부터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등 -



4월 4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

4월 4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



4월 4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를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법 제108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보도/설명>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26. 6. 3.(수)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